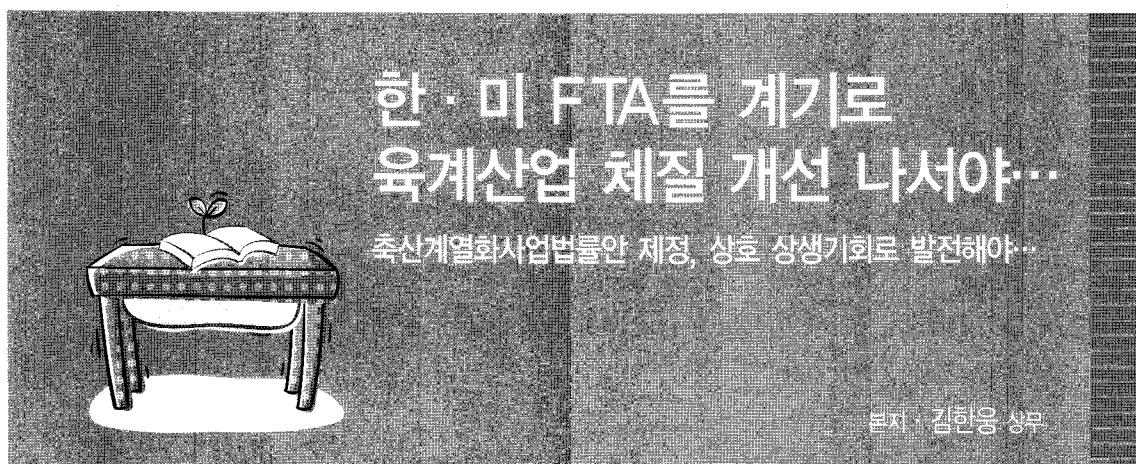


한·미 FTA 비준, 가축계열화사업법 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닭 사육계약 표준약관 제정 등등 업계 전체가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듯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으로 불거진 여야 대립은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촛불시위 등을 비롯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위한 시위로 온 농·축산인들을 연일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미 농민단체에서는 “여·야·정 합의안은 농업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핵심 요구사항이 포함한 대책들이 반영돼야 한다”며 “여·야·정 합의안을 확정해 한·미 FTA 국회 비준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를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다.

“여·야·정” 합의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자급기준을 85% ⇒ 90%로, 보상한도를 범인 5천만원, 개인 3천만원으로 확대 ▲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병) 확대 적용 ▲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수입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 축산소득의 총 소득 공제액의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의 상향조정(닭 15천수 ⇒ 30천수) ▲ 축산발전기금 10년간 2조5천원 조성(농어업예산 실령 외) ▲ 농업 면세유 일몰기간 연장 ▲ 배합사료 및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간 연장 등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야·정” 합의안을 가지고 농민단체장 설득에 나섰으나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등 과거에 제시했던 것을 다시 꺼내드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여·야 합의만 있지 정부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절름발이 합의서라며 추가적인 보완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제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에 “한·미 FTA” 비준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한·미 FTA”가 가져올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감안할 때 무작정 반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업계의 현실이다.

충분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비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FTA를 계기로 우리 축산업계에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농가시설 현대화를 위해 FTA 이행자금으로 매년 5,000여억원씩 10년간 5조원이 자금이 지원된다.

문제는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체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진다.

우리 닭고기 업계만 해도 그렇다. 지금 FTA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진행형이지만 8장 34조로 구성된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제정되게 되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법률안에서는 정부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부처와 협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생산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과 농가의 사육시설 기준도 정해지며 사육경비의 지급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제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의 한 방안으로 축산계열화사업의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있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법 제정에 나선만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